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86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이환희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변론 종결2021. 1. 14.

판결 선고2021.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경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인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용역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도급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관리기구 구성원 도급비 자금관리)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구성원(관리, 경비, 청소)의 인건비 등의 소요 비용을 월 정액으로 지급하며 그 원청을 도급비라 칭하고(이하 "도급비"라 한다) 매월 말일에 "을"에게 제5조3호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 도급비 및 도급내역서 항목은 매년 관련기관에서 고시하는 연도별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 기타 도급비 또는 도급내역서 항목 변경 및 임금조정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면 "갑"은 도급비를 변경하여 지급하며, 이때 본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위·수탁관리계약 변경 합의서에 "갑"과 "을"이 날인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을"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건 사고 및 기타 노무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월 정액 도급비로 책임 관리 하여야 하며 도급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3. 도급금액

관리직도급비	월28,545,670원
경비비 도급비	월19,569,120원
청소비 도급비	월14,981,700원
계	월63,096,490원

4. 관리용역에 따른 상시인원은 관리소 9명, 보안 8명, 청소 10명으로 한다. 사전투입일자 및 인원은 관리운영예산에 따르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은 2017. 1.경 관리직 도급비 28,523,470원, 경비비 도급비 20,975,540원, 청소비 도급비 15,994,660원 합계 65,493,67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부터 2017. 9경까지 매월 말경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각

도급비(관리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청구금액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가 청구하는 도급비 내역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7. 9.경 원고 입회하에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돈은 합계 50,604,04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C주식회사 등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므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하지 않은 퇴직적립충당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도급비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 이외에 관리직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착오로 청구된 초과근무수당 또는 경비직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 청구하면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따른 도급액을 지급하는 등 실제 정산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만으로는 도급비의 정산 및 반환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만으로 도급비용 정산 내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를 예상하여 원·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매월 퇴직금 비용을 선급하고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다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형철